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6080 |
|----------|-------|

발의연월일 : 2023. 12. 26.

발 의 자 : 이주환 · 김성원 · 최영희  
전봉민 · 김학용 · 백종현  
구자근 · 김용판 · 이인선  
정운천 · 이현승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일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산업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의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며”를 “적용하고, 제2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2의2. 연구·인력개발비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순환경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순환경제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3) 순환경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부터 적

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환경제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br>-----<br>-----<br>-----<br>-----<br>-----<br>-----<br>-----<br>-----<br>-----<br>-----적용하고, 제2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를-----<br>-----<br>-----. |
| 1.2. (생략)<br><u>&lt;신설&gt;</u>                                                                                                                                                                                                                                                           | 1.2. (현행과 같음)<br>2의2. 연구·인력개발비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

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순환경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순환경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나.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

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신성

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  
經理)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생략)

## 2. 공제금액

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순환경  
제기술연구개발비-----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1. (현행과 같음)

2. \_\_\_\_\_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신설>

나. (생략)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가.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순환경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p>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u>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u>의 판정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br/>-----<u>신성장사업화시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순환경제기술사업화시설</u>-----<br/>-----<br/>-----.</p> |
|---------------------------------------------------------------------------------------------|---------------------------------------------------------------------------------------------|